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4. 14 선고 2020가단127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서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5.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 6. 13.자 접수 제18430호로 마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9. 27.자 접수 제2849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1997. 11. 17. C과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험계약자인 C이 1998. 10. 5. D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8. 26. D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249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4,558,648원 및 그 중 6,537,2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F이 2017. 3. 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G, 자녀들인 피고 및 H, C, I이 있다.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6. 13.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분할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 6. 13.자 접수 제1843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상속인들은 2017. 9. 27.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하고, 1/3 지분만이 아닌 위 부동산 전부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 전부'라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분할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 9. 27.자 접수 제28491호로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제1, 2분할협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분할협약에 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C의 형제로서 이 사건 제1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 6. 13.자 접수 제18430호로 마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분할협의를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계쟁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하고자 위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제2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C의 재산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중중(이하 ‘소외 중중’이라

하다)은 1980년경부터 소외 종중의 재산관리목록과 지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재산관리목록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소외 종중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에 관하여 소외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계쟁부동산 전부는 그 지목이 농지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데, 소외 종중 이름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외 종중의 종원인 F, L, M 앞으로 각 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사실, ③ 그 중 F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 중 장남인 피고를 F을 대신할 명의수탁인으로 정하면서 그 절차의 편의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방법을 통해 F이 보유하였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소외 종중은 이 사건 계쟁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부여된 재산세 등을 대부분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협의분할은 소외 종중이 망 F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제2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부동산목록

1. 충청남도 논산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농가 주택
 98.82㎡
2. 충청남도 논산시
 답 225㎡
 공유자 3분의 1지분
3. 충청남도 논산시
 전 387㎡
 공유자 3분의 1지분
4. 충청남도 논산시
 전 529㎡
 공유자 3분의 1지분
5. 충청남도 논산시
 답 2258㎡
 공유자 3분의 1지분
6. 충청남도 논산시
 답 2205㎡
 공유자 3분의 1지분
7. 충청남도 논산시
 답 3785㎡
 공유자 3분의 1지분

